

주민등록 과태료 환급 안내문 반송분 공시 송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과태료를 부과·징수 처리하여, 오부과된 과태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급하고자 안내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안내문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장



1. 공 고 대 상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소	환급수수료
1	배**	1977.11.17.	인천 서구 검암로20번길 4	40,000원(이자 별도지급)
2	김**	1972.02.19.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4	40,000원(이자 별도지급)

2. 공 고 기 간 : 2018.01.16. ~ 2018.02.23.까지(29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 대상자의 통장사본을 FAX(032-560-2816)로 송신하시거나, 아래 담당자 전화번호로 은행계좌를 통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하오니, 해당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시어, 수수료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양혜지 문의전화: 032-560-3007)

